
Policy and Law Report _Vol.14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8.08.~ 2022.08.15.) -

August 16,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고용 노동부	• 금속주조업(주물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 연내 20여 개 위험업종을 대상으로 가이드북 추가 제작 예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금속주조업(주물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함 그간 제작 배포한 자율점검표 및 안내서 등이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간단히 이해하고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둠 또한,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육상화물취급업, 염색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20여 종이 추가로 제작될 예정임	2022-08-11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함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해 마련됨 < 분야별 규제혁신과제 현황 > <table> <tr> <th>계</th> <th>신산업 지원</th> <th>민생불편·부담 개선</th> <th>국제조화</th> <th>절차적 규제 개선</th> </tr> <tr> <td>100건</td> <td>19건</td> <td>45건</td> <td>13건</td> <td>23건</td> </tr> </table>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① 신산업 지원 - 디지털헬스기기 등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 마련 - 미래 식품 원료의 인정 확대	계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100건	19건	45건	13건	23건	2022-08-11
계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100건	19건	45건	13건	23건								

부처	내용	일시
	② 민생불편·부담 개선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확대 -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확대 ③ 국제조화 -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 구성·운영 - 디지털헬스기기의 국제적 규제기준 선도 ④ 절차적 규제 해소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계도기간 부여 -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신설	
금융 위원회	•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 「금융 민생안정 대책」의 원활한 현장 집행 ·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상담 강화 ·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시너지(컨설팅 ↔ 자금지원) 제고 -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어려움 가능성에 대응 ·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신규 공급 (6조원) ·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글로벌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 지원 ·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②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 금융시장 ➡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 완화 - 금융회사 ➡ 유동성 및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자본+충당금) 확충 ③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 [세부과제 1]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의 새판 깔기 - 금융산업의 빅블러 현상 및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 디지털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 - 금융·비금융·공공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예: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 -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감독·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의 글로벌화 지원	2022-08-08

부처	내용	일시																		
	[세부과제 2] 자본시장 재도약 -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 -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편 [세부과제 3]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 도모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추진 -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 추진 [세부과제 4]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 -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 최소화하고 시장보완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 새로운 투자수단 도입 및 제도개선 위기 구조 부채 누적 + 물가↑ 금리↑ 환율↑ 자산가격↓ 경기↓ <table> <tr> <th>가계, 소상공인, 기업</th><th>금융시장</th><th>금융산업</th></tr> <tr> <td> ▶ 채무상환부담 증가 ▶ 부채 부실화 위험 </td><td> ▶ 자금조달 애로 ▶ 주가·환율 변동성 </td><td> ▶ 유동성 및 건전성 우려 (취약한 제2금융권) </td></tr> </table> 위기 선제 대응 <table> <tr> <th>빈틈없는 취약계층 보호</th><th>금융시장 안정</th><th>금융산업 건전성 강화</th></tr> <tr> <td> ✓ “125조원+@” 금융 민생안정 대책 ■ 물려서 못 받는 일 없도록 홍보 ■ 중기부 프로그램과 시너지 제고 ✓ 중소기업 금융애로 선제적 대비 ■ 금리, 원자재 등 금융애로 완화 ■ 중소기업 회계부담 경감 </td><td> ✓ 일시 애로기업 유동성 지원 ■ 저신용등급 기업·금융회사 자금조달/차환 애로지원 ✓ 주식·채권·외환시장 안정 ■ 기재부, 한은, 금감원과 긴밀한 정책협조 </td><td> ✓ 유동성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 유도 ■ 실물부문 부실확대 가능성 대비 (금융회사 “1차 방어선”) ✓ 취약금융회사 감독 강화 ■ 금융회사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 부실예방을 위한 사전적 금융안정계획 활용 </td></tr> </table> 위기 넘어 성장 위기를 넘어 미래성장 지원 : - 금융산업 혁신 + 민간부문 지원 - <table> <tr> <th>금융산업 디지털화</th><th>자본시장 재도약</th><th>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th></tr> <tr> <td> ▶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 금융감독행정 쇄신 </td><td> ▶ 자본시장 체질 개선 ■ 시장 신뢰도 제고 ■ 글로벌 정합성 제고 </td><td> ▶ 정책금융지원 확대 ■ 첨단 전략산업 등 미래핵심분야 지원 집중 ▶ 민간중심 모험자본 육성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도입 </td></tr> </table> ① 혁신과 소비자보호 균형, ② 이해관계자 의견조정, ③ 체감과제 우선 추진	가계, 소상공인, 기업	금융시장	금융산업	▶ 채무상환부담 증가 ▶ 부채 부실화 위험	▶ 자금조달 애로 ▶ 주가·환율 변동성	▶ 유동성 및 건전성 우려 (취약한 제2금융권)	빈틈없는 취약계층 보호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건전성 강화	✓ “125조원+@” 금융 민생안정 대책 ■ 물려서 못 받는 일 없도록 홍보 ■ 중기부 프로그램과 시너지 제고 ✓ 중소기업 금융애로 선제적 대비 ■ 금리, 원자재 등 금융애로 완화 ■ 중소기업 회계부담 경감	✓ 일시 애로기업 유동성 지원 ■ 저신용등급 기업·금융회사 자금조달/차환 애로지원 ✓ 주식·채권·외환시장 안정 ■ 기재부, 한은, 금감원과 긴밀한 정책협조	✓ 유동성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 유도 ■ 실물부문 부실확대 가능성 대비 (금융회사 “1차 방어선”) ✓ 취약금융회사 감독 강화 ■ 금융회사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 부실예방을 위한 사전적 금융안정계획 활용	금융산업 디지털화	자본시장 재도약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 금융감독행정 쇄신	▶ 자본시장 체질 개선 ■ 시장 신뢰도 제고 ■ 글로벌 정합성 제고	▶ 정책금융지원 확대 ■ 첨단 전략산업 등 미래핵심분야 지원 집중 ▶ 민간중심 모험자본 육성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도입	
가계, 소상공인, 기업	금융시장	금융산업																		
▶ 채무상환부담 증가 ▶ 부채 부실화 위험	▶ 자금조달 애로 ▶ 주가·환율 변동성	▶ 유동성 및 건전성 우려 (취약한 제2금융권)																		
빈틈없는 취약계층 보호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건전성 강화																		
✓ “125조원+@” 금융 민생안정 대책 ■ 물려서 못 받는 일 없도록 홍보 ■ 중기부 프로그램과 시너지 제고 ✓ 중소기업 금융애로 선제적 대비 ■ 금리, 원자재 등 금융애로 완화 ■ 중소기업 회계부담 경감	✓ 일시 애로기업 유동성 지원 ■ 저신용등급 기업·금융회사 자금조달/차환 애로지원 ✓ 주식·채권·외환시장 안정 ■ 기재부, 한은, 금감원과 긴밀한 정책협조	✓ 유동성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 유도 ■ 실물부문 부실확대 가능성 대비 (금융회사 “1차 방어선”) ✓ 취약금융회사 감독 강화 ■ 금융회사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 부실예방을 위한 사전적 금융안정계획 활용																		
금융산업 디지털화	자본시장 재도약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 금융감독행정 쇄신	▶ 자본시장 체질 개선 ■ 시장 신뢰도 제고 ■ 글로벌 정합성 제고	▶ 정책금융지원 확대 ■ 첨단 전략산업 등 미래핵심분야 지원 집중 ▶ 민간중심 모험자본 육성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도입																		

부처	내용	일시
금융 위원회	• 금융권 「내부통제제도」 개선 작업 착수 현행 규정체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과 실효성과 관련된 쟁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TF운영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힘 동 TF의 주요 논의과제로는 ①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가 내부통제에 대한 규율·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예정 ② 제도적으로는 내부통제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적의 규율방식 관련, 현행 “규정중심(rule-based)” 규율체계 하에서 각 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지, 구체적 열거사항은 최소화하고 주어진 원칙 하에서 세부사항을 스스로 마련·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 규율방식도 병행 또는 전환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 ③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 적용범위, 권한과 책임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 - 특히, 금융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 계획	2022-08-12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소득세법 일부개정」(2023.1.1. 시행 예정) 현행법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제12조제3호러목) ※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	2022-08-12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2022.8.12. 시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제2조제3항) ※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22-08-12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2.8.10. 시행)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작업장소가 옥외 장소인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휴식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작업장소가 옥내·옥외 인지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566조)	2022-08-1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2.8.11. 시행)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연수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법행위를 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 8. 10. 공포, 2022. 8. 11. 시행)됨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의 내용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전문인력을 확보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완화 (제9조제2항제3호) -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은행' 외에 '상호저축은행'이나 '증권금융회사'에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도 추가함 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내용 등 (제10조의2 신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하려는 전문인력이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과정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령, 조세 및 회계 제도 등에 관한 사항' 및 '최근 부동산개발 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연수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③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8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영업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업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천만원의 과징금을, 시·도지사의 실태조사를 방해한 경우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 - 과징금의 부과 통지를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도록 함	2022-08-09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데이터 품질관리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 신설 (안 제20조의2 신설) -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데이터 품질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규정함 ②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의 운영 신설 (안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 신설) -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 대상, 대상별로 적용되는 인증 기준 및 인증신청방법,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방법을 규정함 ③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신설 (안 제28조제2항제5의2호 신설) -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 수행 및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규정함 ④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시 청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37조제2의2호 및 제40조 신설) -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품질인증 허위 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 의견 제시기간 : 8/10(수)~9/20(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로 제출	2022-08-1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77호, 2022. 4. 19., 제정)을 개정함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 및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4조의2, 별지 제5호의2 서식 신설) ② 데이터 품질인증서와 데이터 품질인증에 대한 표시를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4조의3, 별지 제5호의3서식, 별표 신설) ③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서와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서에 대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4조의4,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 신설) ※ 의견 제시기간 :8/10(수)~9/20(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진흥과)로 제출	2022-08-10
환경부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위해성평가 실시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동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실시 권한은 위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보건협회로 변경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제도 실시권한 위임 규정 신설 (안 제22조제3항제1호~제8호) ②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업무 위탁기관 변경 (안 제22조제4항제4호~제6호, 제5항제1호~2호) ※ 의견 제시기간 : 8/10(수)~9/19(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로 제출	2022-08-1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과 실제 제도 운영시 불일치 사항에 대한 현행화 등 규정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조사대상) 난방용 연료 및 비분리중간체 등 환경 배출 가능성이 낮은 물질은 점오염원 조사대상 제외 (안 제5조) ② (절차 등) 매년 안전원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지침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안 제7조) – 사업장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현행화 (안 제8조) ③ (조사표) 사업장이 배출량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비대상 사유를 기재하는 조사표 서식 간소화 (안 별지서식) ④ (기타) 법령 정비 기준 적용, 인용 법령명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현행 권한위임 규정에 불일치 사항 및 단순 기재 오류 등에 대한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 의견 제시기간 : 8/12(금)~9/1(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화학안전과)로 제출	2022-08-12
국토교통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 이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는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국외제조사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아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73조제2항제3호, 안 제87조제1항, 안 제89조의2 신설, 안 제161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안 제194조의2 신설, 안 제243조 신설)	2022-08-12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별표 21의2)에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기준 등을 추가 ※ 의견 제시기간 : 8/12(금)~8/16(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간의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특수관계인 제도를 합리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요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안 제4조제1호가목) -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기본 범위를 '혈족 6촌 이내, 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중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동일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②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안 제4조제1호라목) -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 중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③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안 제5조제2항) -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열편입 유예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고자 함 -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후에도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입 후 1년 내까지는 계열편입 유예신청을 허용하고, 계열편입 유예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편입 유예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2022-08-1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④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 시점 변경 (안 제5조제1항) - 현행 시행령은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의존도 요건'에서 매출·매입 거래액 판단 시점을 임원독립경영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요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자 함 ※ 의견 제시기간 : 8/11(목)~9/20(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정책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u>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1인)</u>」 최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원금보장,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가로채 피해자를 양산하는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가 늘어났음. 이에 더해 금리인상이 이뤄지면서 대출을 받아 투자한 피해자들이 파산하게 되고 가정까지 송두리째 파괴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과거에도 투자자들에게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이른바 '조희팔 사건'으로 자살한 사람이 수십명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처벌도 미약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 비율도 20%가 넘는 실정임. 이는 금융사기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위하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처벌수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처벌 강화보다 적극적인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유사수신행위의 특성상 사전예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처벌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통한 사후규제가 더욱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방향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입장임 이에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하여 형사처벌하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50억 이상의 중대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여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함 (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6조제3·제4항 신설)	2022-08-09
	• 「<u>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u>」 최근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로부터 제공받은 협찬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일명 “뒷광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광고주가 아닌 인플루언서들의 기만행위나 거짓광고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품을 추천·보증한 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을 문자로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의2 및 제9조제3항 신설 등)	2022-08-1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6인)」 현행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는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다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임 그런데 제도의 홍보 부족과 은행별 충족 요건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에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2022-08-10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지능화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자 함. 그리고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신설) ②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함 (안 제4조의2 신설)	2022-08-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③ 다른 사람에게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안 제8조제2항 신설) ④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함 (안 제11조제3항 신설)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의2 신설)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u>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1항 후단, 제13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신설 등)	2022-08-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의원 등 10인)」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사고의 내용·사고원인·피해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받은 하위사용자일 경우, 화학물질의 물질안전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화학물질의 물질안전정보가 변경될 경우 환경부장관이 등록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게 됨. 그러나 하위사용자에게는 등록자가 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1개월의 전달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변경된 정보가 즉시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로 인하여 사업자의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및 화학사고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화학물질 정보가 변경될 경우 보다 신속하게 그 정보가 하위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예고 등을 통해 변경이 예고되는 경우에도 하위사용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확산 방지라는 「화학물질관리법」 본래 취지를 강화하고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함 (안 제29조제3항 및 제31조)	2022-08-11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별첨1】참조		
국회도서관	8/1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0호 발간 -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	
예산정책처	주중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주중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 2021회계연도 총수입 세목별·항목별 증감 원인 및 주요 이슈 등을 분석	
입법조사처	8/16(화)	「NARS 현안분석」 발간 -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서양 동맹의 미래	
	8/19(금)	「NARS 입법영향분석」 발간 - 주거급여법의 입법영향분석	

【별첨1】 제398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별위	8/17(수) 10:00	전체회의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업무보고
	8/18(목) 14:00	전체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법사위	8/18(목) 10:00	전체회의	업무현황보고
과방위	8/18(목) 10:00	전체회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외통위	8/18(목) 10:00	전체회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 업무보고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심사
	8/19(금) 10: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
행안위	8/18(목) 10:00	전체회의	업무보고
문체위	8/17(수) 10:00	전체회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
	8/18(목) 10:00	예·결산심사소위	2021 회계연도 결산
	8/19(금) 10: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 법안 상정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농해수위	8/18(목) 10:00	전체회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환노위	8/17(수) 14:00	현장시찰	물류센터 종사자 근무환경 점검을 위한 현장시찰
	8/18(목) 10:00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여가위	8/18(목) 10:30	전체회의	소위원회 구성의 건, 업무보고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16(화) 10:00	(자연이 준 선물) 케나프 전시	양의원영 의원실, 쓰레기센터 등	의원회관 제2로비
8/16(화) 14:00	디지털 시대의 AI 기반 교육혁명	이태규·조은희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8/16(화) 19:00	김한규와 경제 읽기 - 식량위기의 원인과 대응 방향	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8/17(수) 10:00	SW프리랜서의 불법파견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 안 국회토론회	윤미향·이수진(비례)· 정필모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8/17(수) 14:00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소병훈·위성곤·신정훈· 어기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8/17(수) 16:00	양의원영의 연속정책대담 - 올겨울 에너지 공급 문제없나?	양의원영 의원실	유튜브
8/19(금) 10:00	합리적인 그린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정책 세미나	정태호 의원실, 그린수소사회연구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
8/19(금) 14:00	6.1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남인순 의원실, 한국여성정의	의원회관 3간담회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47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8/11(목)	「현안, 외국에선?」 제41호 발간 - 일본의 아동행정 컨트롤타워가 될 어린이가정청의 출범	
예산정책처	8/9(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추진 현황 및 사업의 합목적성,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주요 쟁점 분석·평가	
	8/11(목)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 장기적인 인구구조의 변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국가 재정의 장래 모습에 대한 전망	
	8/12(금)	「2021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8/12(금)	「대한민국 경제」 발간 - 대한민국 경제를 생산계정, 소득계정, 자본계정, 금융계정 등 국민계정 체계에 따라 분석하고 각 계정별 주요 경제지표, 경제정책, 경제현황 등을 소개	
입법조사처	8/8(월)	「이슈와 논점」 제1977호 발간 -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미동맹의 방향과 과제	
	8/9(화)	「NARS 입법영향분석」 제54호 발간 - 청렴계약제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8(월) 10:00	<u>이른둥이 살리는 모유은행 설립과 지원 방안은?</u>	신현영 의원실, 대한모유수유의학회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8/9(화) 10:00	<u>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u> -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안철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8/9(화) 10:00	<u>성숙한 반려문화정책과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위한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u>	허은아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
8/9(화) 10:00	<u>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u> - 대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 해소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8/10(수) 10:00	<u>신(新)냉정체제 한반도와 한일관계 토론회</u>	김한정 의원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10(수) 14:00	<u>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강화 법률 제정 토론회</u>	윤주경 의원실, 국가보훈처	의원회관 2소회의실
8/10(수) 14:00	<u>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 세미나</u> - 양극화해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필모 의원실, 국회공정사회포럼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8/12(금) 14:00	<u>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 "생애말기 돌봄 체계화"</u>	신영현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백대용 변호사 |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변호사 |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변호사 |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 • 나인선 변호사 |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 • 최유리 변호사 |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변호사 |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변호사 |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 • 김은혜 변호사 |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